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. 26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. 1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21. 1. 18.
- 다. 상정일자: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1.2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전산정보과장 최종】

### 가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 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, 효율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한 관련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 중복 사항 삭제(안 제2조, 제7조, 제8조, 제23조, 제31조)
- 효율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변경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
- 정책고객서비스 사업종료(2018.10.25.)에 따라 관련사항 삭제(안 제2조, 제46조)

- 제정(개정)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따른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(안 제 24조, 제47조, 제48조)
- 법령개정에 따른 법령명, 조항 변경(안 제1조, 제27조, 제39조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#### ○ 본 일부개정안은

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 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, 효율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○ 주요내용으로는

- (안 제2조, 제7조, 제8조, 제23조, 제31조)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와 중복된 사항 삭제함.
- 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에 효율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변경하는 사항임.
- (안 제2조, 제46조)에 정책고객서비스 사업종료(2018.10.25.)에 따라 관련사항 삭제함.
- (안 제24조, 제47조, 제48조)에 제정(개정)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따른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함.
- (안 제1조, 제27조, 제39조)에 법령개정에 따른 법령명, 조항 변경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 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정보화추진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변경하는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 타: 없음

 처음으로